

# 창업교육센터 운영규정(4-3-14)

제정 : 2012. 8. 1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센터는 건양대학교 창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건양대학교 창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내 창업교육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학의 창업교육관련 사업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창업교육”이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필요한 관련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예비창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경영지식, 가치관, 태도 등을 함양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② “창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대학의 창업교육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 설치된 전담조직을 말한다.

**제5조(사업 및 업무)**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 전체 또는 단과대학, 전공별로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통합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관계 부서와의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
5. 대학 내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행사 및 연구 활동의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창업강좌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7. 창업동아리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8. 창업교육패키지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9. 창업지원관련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10. 창업관련 자유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11. 비즈쿨고교 연계사업 운영
12. 창업경진대회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13. 기타 창업교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6조(조직 및 업무)** ① 창업교육센터에는 창업교육팀, 창업동아리지원팀, 사업화지원팀을 둔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 ④ 센터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보조를 위하여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센터장이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센터장을 대신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교무처장, 의료공과대학장, 경영대학장, 창업교육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정의 실무경력을 갖춘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도별 창업교육 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2. 창업교육 강화,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변경에 관한 사항
  - 3. 센터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센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개정
  - 5.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안)** 센터 업무와 관련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8.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수행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